

고성군마스코트 『고룡이』 상표사용에 관한조례(안)

의안번호 487

제출년월일 : 1998. 7. 15.

제출자 : 고성군수

1. 제정이유

- 고성군마스코트 『고룡이』 등록상표로 군 얼굴상품 홍보와 경영수익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하여 세계화,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타 시군과의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함.

2. 주요골자

- 상표를 특산물등에 표시, 광고,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자의 신청자격(안 제3조)
 - 국가나 도, 군, 농협등 공신력있는 기관단체등에서 인정받은 상품
 - 고성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명품, 경쟁상품 생산자
- 상표사용신청시 20일이내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통지하고 상표사용 유효기간은 2년으로하며 연장신청이 있을때는 2년간씩 계속연장 (안 제4조)
- 상표의 사용료(안 제5조)
 - 농.수.축산물 및 그 가공품(공산품) : 두료
 - 일반 공산품 : 상품 판매금액의 3/1,000
 - 캐릭터 상품 : 상품 판매액의 10/1,000이상 쌍방간 협의에 의거 결정
- 상표사용 승인 받은자가 군 또는 상표의 명예를 실추시켰을때 상표 사용을 중지시키고 중지일로부터 2년간 재사용 승인할 수 없다. (안 제6조)
-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고성군 『고룡이』 상표사용에 관한 규정에 『고룡이』 상표사용 승인받은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된 것으로 본다. (안 : 부칙)

3. 입법예고 : 불필요

4. 제정조례안 : 불임

고성군 조례 제 호

고성군마스코트『고룡이』상표사용에관한조례(안)

제 1 조(목적) 고성군마스코트『고룡이』상표(이하 "상표"라 한다)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용어의 정의) ① "상표"라 함은 고성군마스코트『고룡이』가 표시된 상표를 말한다.

② "특산품"이라 함은 고성군내(이하 "군내"라 한다.)에서 생산, 가공된 생산품으로서 국가나 도, 군, 농협등 공신력있는 기관단체등에서 인정받은 상품을 말한다.

③ 캐릭터상품이라 함은 고성군마스코트『고룡이』를 이용한 상품을 말한다.

제 3 조(사용신청) ① 상표를 특산품 등에 표시, 광고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자의 신청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산품을 생산하는 자

2. 고성군수(이하 군수라 한다)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명품, 경쟁상품 생산자

②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자가 상표 사용을 승인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.

③ 생산자가 상표 사용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상표 사용각서(별지 제2호 서식)와 상표도안(모형)을 첨부하여야 한다.

제 4 조(사용의 승인) ① 제3조에 의거 상표사용 신청이 있으면 군수는 고성군정 조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일이내에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통지하여야 한다.

② 사용승인이 결정된 자에게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승인서를 교부한다.

③ 상표사용 유효기간은 그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. 다만, 신청자의 연장 신청이 있을때는 2년간씩 계속 연장할 수 있다.

제 5 조(사용료 및 사용료 납부) ① 상표 사용료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.

1. 농·수·축산물 및 그 가공품(공산품) : 무료
2. 일반 공산품 : 상품판매금액의 3/1,000
3. 캐릭터 상품 : 상품판매금액의 10/1,000이상 쌍방간 협의에 의거 결정
② 사용료부과 조사는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등에 의한 서면 또는 직접 조사할 수 있다.
③ 상표사용료는 관계공무원이 상표사용 상품판매 실적을 매년 12월말에 확인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부과 고지하고 납부기간은 30일로 한다.

제 6 조(사용의 취소) ① 상표 사용을 승인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고의로 군 또는 상표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때
2. 타지역 상품을 군내 생산품인 것처럼 포장 판매할 때
3. 기타 하위로 군 또는 상표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

② 제1항에 의해 승인을 취소받은 자에 대하여는 등록상표 사용을 중지시키고 중지일로부터 2년간 재사용 승인할 수 없다.

제 7 조(청문) ① 사용의 취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절차 규정을 준용한다.

제 8 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.

- 부 례 -

제 1 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 2 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고성군『고룡이』상표사용에 관한 규정에 의거 『고룡이』상표사용 승인받은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된 것으로 본다.

제 3 조(폐지규정)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고성군『고룡이』상표사용에 관한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.

(별지 제1호 서식)

고룡이 상표사용승인 신청서

신 청 체 (업체)명		전화번호	
성 명		주민등록번호	
인 주 소			
생 산 품 목			
산 량 년간총생산량			
포 장 단 위			
상 표 포장지 사용매수			
상 표 사 용 기 간			

위와 같이 “고룡이” 상표 사용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
주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: (인)

고성군수 귀하

(별지 제2호 서식)

고룡이 상표 사용 각서

신청자 주 소 :

업체명 :

성명 : (주민등록번호 : -)

상기 본인은 고성군수로부터 승인받은 고룡이 상표를 사용함에 있어 생산품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고성군과 고룡이 상표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하고 고룡이 상표사용 상품에 대한 분쟁이 있을시 민.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약속드리며 각서를 제출합니다.

卷之三

성명 (인)

고성군수 귀하

(별지 제1호 서식)

고룡이 상표사용 승인서

승인번호

1. 단체(업체)명 :

2. 성명 :
(대 표 자)

3. 주민등록번호 :

4. 주소 :

품목	생산량	포장단위	상표사용기간	비고

. 전화번호 :

5. 고룡이 상표승인 내역

. 상품 생산지 :

고성군마스코트 “고룡이” 상표사용에 관한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
“고룡이” 상표사용을 승인합니다.

고성군수